

의안번호	2211826
의 퇴 인	한민수 의원
회 답 일	2025. 8. 3.
추계번호	25F40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의 지정면세점 구입횟수 제한 근거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1조의13제6항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입 횟수 제한(연 6회) 규정 삭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13제6항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의 구입횟수 제한(연 6회)을 폐지할 경우 면세점 구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됨(안 제121조의13제6항 삭제)
- 현행법에 따라 제주도에 입도(입항)하는 경우, 지정면세점에서 연간 최대 6회까지만 면세 구매가 가능함
 - 1회당 면세한도: \$800 + 주류 2병(2리터, \$400 이내) +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
 - 제주도 지정면세점 제도는 「관세법」에 따라 제주도 입도 내국인에게 해외 출국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특례의 일

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국인은 연간 6회까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제주도 방문객은 횟수 제한 없이 면세물품의 구매가 가능해져 추가적인 관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간 6회를 초과하여 제주도에 입도하는 내국인의 규모, 해당 내국인의 평균 면세물품 구매액수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계나 추정치가 부족하여 세수효과를 정량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매년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나, 방문횟수를 1회/2회/3회/4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그쳐, 6회를 초과하여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에 관한 세분화된 통계가 없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24년 전체 제주도 방문객 89.9만명 중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응답자 중 19.0%(1,361명)가 제주도를 연 4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의 방문횟수 통계: 2024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7,000	100.0
방문횟수	1회	935	13.5
	2회	2,603	37.6
	3회	2,101	29.9
	4회 이상	1,361	19.0

자료: 제주관광공사,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025.3.

- 또한 6회 초과 입도객의 면세물품 구매 실적에 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